

■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-296호

「은행법감독규정」 제5조제9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외국 은행 국내지점 신설 인가 신청사항을 공고합니다.

2015년 11월 19일
금융위원회

- 다 음 -

가. 신청현황

신청자	신청일자	신청취지 및 내용
중국광대은행주식 유한회사 (China Everbright Bank Co.Ltd)	2015.11.17.	○ 은행법 제58조에 따라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신설 인가 신청* * 중국광대은행 서울지점을 설립하는 내용

나. 의견 제시방법 및 기간

상기의 신청현황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'15.11.30일까지 아래의
연락처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담당자 :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
은행과 김윤희 사무관(☎2156-9812, yh.kim@korea.kr)